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안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라.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홍보하고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규정

마. 아동친화도 조사 관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

바. 아동참여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23조 ~ 제32조)

-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관련 조항 신설

(안 제33조 ~ 제35조)

- 아동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규정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 조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환경, 놀이와 여가,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시장이 구미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시설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심의·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구미시의회의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제1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구미시의회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3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4조(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시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아동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회에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수당 등) 아동위원회 및 아동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표창 등)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33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 주민 또는 전문가를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아동의 권리침해 구제, 고충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⑧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6. 생략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제32조)
-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안 제4조),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액
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참여위원회	100천원×50명×2회	10,000천원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인당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2017년 예산편성지침 기준

- 그 외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은 구미시가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선언적 내용이 포함,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도시TF팀 허광호(054-480-6577)

소관 실·과		가족지원과
입 안 자	담 당 관	이 장 호
	담 당	김 종 배
	담 당 자	허 광 호 (480-6577)